

▣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일부 개정 전문

본말사주지인사규정

불기 2540(1996)년 03월 06일 제정 공포
불기 2553(2009)년 12월 08일 개정 공포
불기 2554(2010)년 01월 21일 개정 공포
불기 2554(2010)년 04월 06일 개정 공포
불기 2554(2010)년 04월 22일 개정 공포
불기 2554(2010)년 10월 27일 개정 공포
불기 2555(2011)년 11월 03일 개정 공포
불기 2568(2024)년 09월 11일 개정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무원법 제43조에 의하여 본종 산하의 본·말사 주지 임명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말사 주지 임명에 관하여는 중법·중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인사권) 본·말사 주지의 임명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장이 행한다.

제4조 (임명시기) 본·말사 주지는 임명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결원의 적기 보충)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또는 말사 주지에 결원(缺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임명원칙) 교구본사주지는 교구 산중총회 또는 총림방장의 추천을 거쳐, 말사주지는 당해 말사가 소속한 교구의 본사 주지의 품신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품신평가) 교구본사주지는 말사주지를 품신평가에 있어서 표1에 의한 “갑”의 인사고과를 받은 공찰 주지를 우선하여 품신평가 하여야 한다.<불기 2554(2010).4.6. 개정>

제7조의2 (인사평가) 교구본사주지는 공찰인 말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지품신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사고과에 의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사평가는 갑, 을, 병, 정, 무 5단계로 구분하고 평가항목은 중무행정, 포교·복지, 재정, 불사, 심의위원회 의견으로 한다.
2. 공찰인 말사의 주지가 “을” 이상의 인사고과를 받은 경우 재임을 추천할 수 있다.
3. 공찰인 말사의 주지는 매년 12월중으로 “사찰현황 보고서”를 교구본사 주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인 경우에는 템플스테이 운영실적을 추가하여야 한다.
4. 공찰인 말사의 주지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임기 4년간의 “사찰현황 보고서”를 교구본사 주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사평가의 내용은 해당 사찰의 주지가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

[불기 2554(2010).4.6. 신설]

제7조의3 (심의위원회) 전조의 인사평가를 하기 위하여 각 교구본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총무국장, 재무국장, 포교국장 및 본사주지가 추천한 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는 공찰에 대한 책임자를 선발하여 추천하며 말사주지 임기만료 3개월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인사평가를 시행한다.
3. 심의위원회는 매년 4/4분기중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찰의 인사평가를 실시한다.
4. 심의위원회는 인사평가 중 사찰의 주지가 직무비위나, 직무유기가 있는 경우 본사주지에게 보고하고 본사주지는 총무원 호법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불기 2554(2010).4.6. 신설]

제8조 (의무이행) 주지직에 취임하는 자는 중헌·중법·중령에 규정된 주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 (교육이수) ① 말사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주지품신 이전에 총무원장이 정하는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무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에 위임할 수 있다.<불기 2554(2010).10.27. 개정>
- ② 말사 주지는 임기 내에 종단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불기 2554(2010).10.27. 개정>

제2장 임명 자격

- 제10조 (자격) ① 교구본사주지의 자격은 이 규정 제6조의 추천 당시 법계 중덕 이상, 만 70세 미만의 비구이어야 한다.<불기 2555(2011).11.3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 ② 말사주지의 자격은 이 규정 제6조의 품신 당시 법계 중덕(정덕) 이상인 승려이어야 한다.<불기 2553(2009).12.8, 불기 2555(2011).11.3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 ③ 삭제 <불기 2555(2011).11.03 개정, 불기2568(2024).09.11 삭제>
- ④ 삭제 <불기 2555(2011).11.03>

제11조 (결격 사유) <불기2568(2024).09.11 삭제>

제3장 임명

제1절 총칙

- 제12조 (임명후보자 추천서) ① 산중총회 의장이나 총림의 방장이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교구본사주지추천서(教區本寺住持推薦書)를 작성하여 총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구본사주지가 당해 교구 소속 말사주지 후보자를 품신할 때에는 말사주지품신서(末寺住持稟伸書)를 작성하여 총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무원 총무부는 교구본사주지 추천서와 말사주지 품신서의 서식을 비치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명적부 심사) ① 총무원 총무부는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18조의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원조회를 거쳐 임명적부 심사를 실시한다.<불기2568(2024).09.11 개정>

② 제1항의 조회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회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주지 추천 또는 말사주지 품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적부(任命適否)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14일 이내로 임명적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불기2568(2024).09.11 단서 신설>

제14조 (반려) ① 총무원장은 추천 또는 품신된 본·말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임명적부심사(任命適否審査)를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자 또는 품신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② 말사주지 품신서가 반려된 경우 본사주지는 반려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말사주지를 재품신하여야 한다.

③ 교구본사주지 추천서가 반려된 경우 산중총회 의장 또는 총림 방장은 반려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교구본사주지 후보자를 재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명) 총무원장은 임명적부 심사의 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명적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한다.

제16조 (발령대장) 총무원 총무부는 본·말사 주지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한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한다.

제2절 본사주지

제17조 (본사주지 추천절차) ① 산중총회의 의장은 산중총회에서 본사주지 후보자를 확정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원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1. 수행이력서 1부
2. 구비서류 부착 외 사진2매(중단 대가사 수한 사진)<불기 2553(2009).12.8 개정>
3. 서약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

본) 1통<불기 2553(2009).12.8 개정>

5. 산중총회 회의록 1부

6.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1부

7. 주지 취임 후 사찰운영계획서 1부<불기 2553(2009).12.8 본호 신설>

8. 자필 유언장 1부(「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중단 출연에 관한 령」견양 참조)<불기 2554(2010).4.22 개정>

9. <삭제>

10. <삭제>

② 총림의 방장이 본사주지후보자를 확정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제8호 서류와 총림방장 추천서를 갖추어 총무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불기 2554(2010).1.21. 개정>

③ 산중총회 또는 총림에서 기일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때는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주지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임기내에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절 말사주지

제18조 (말사주지 품신절차) ① 직할교구 말사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불기 2568(2024).09.11 개정>

②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말사 주지 임기만료 2개월전에 말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1. 임명품신 공문(소정양식)<불기 2553(2009).12.8 개정>

2. 삭제 <불기 2553(2009).12.08>

3. 수행이력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불기 2553(2009).12.8 개정>

5. 서약서 1부

6. 구비서류 부착 외 사진 2매(중단 대가사 수한 사진)<불기 2553(2009).12.8 개정>

7. 교구본사주지가 작성한 재임(在任)공적서 1부(재임일 경우)<불기 2553(2009).12.8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8. 전임주지 사직서 원본(전임주지가 의원사직인 경우에 한함) 1부<불기 2553(2009).12.8 개정>
 9. 교육이수각서 1부(신임일 경우)<불기 2553(2009).12.8 신설>
 10. 신도등록각서 1부(신임일 경우)<불기 2553(2009).12.8 신설>
 11. 사찰운영위원회 명단 1부(재임일 경우)<불기 2553(2009).12.8 신설>
 12. 주지 취임 후 사찰운영계획서 1부<불기 2553(2009).12.8 신설>
 13. 창건주 추천서(사설일 경우) 또는 중창주 추천서(중창주 인정을 받은 공찰일 경우)<불기 2553(2009).12.8 신설, 불기2568(2024).09.11 개정>
 14. 자필 유언장 1부(「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중단 출연에 관한 령」견양 참조)<불기 2554(2010).4.22 개정>
 15. 삭제 < 불기2554(2010).04.22>
 16. 삭제 < 불기2554(2010).04.22>
- ③ 교구본사주지는 부득이한 경우 말사의 사찰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는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로 한다.<불기 2555(2011).11.03 개정>

제18조의2 (미입주사찰 주지) ① 타종단과의 분규에 따른 미입주사찰의 주지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중에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② 총무원 총무부장은 미입주사찰의 현황을 총괄 관리하며 제18조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중에서 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③ 미입주 사찰 주지의 임기는 종무원법 제27조(임기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재임 중으로 하며, 퇴임 후에는 해당사찰주지를 사직한다.

[불기 2554(2010).4.6. 신설]

제4장 인사 기록

제19조 (인사기록표의 작성·유지·보관) 총무원 총무부는 본·말사주지의 인사기록표를 작성·유지·보관한다.

제20조 (인사기록표의 정리 및 변경) 인사기록표에 기재된 사실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람 기산의 경과조치) 이 법 제10조제3항의 승람 기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전 출가자의 승람은 사미계를 수지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사설사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설사암 또는 종단에 신규등록한 사암의 주지 추천권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건주 또는 권리인이 가진다.

② 총무원 총무부는 창건주 또는 권리인이 추천권을 행사한 주지 후보자의 임명적부 심사에 있어서 제10조제2항, 제3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불기 2553(2009). 12.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불기2568(2024).09.11 개정>

부칙 <불기 2554(2010). 1.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불기2568(2024).09.11 개정>

부칙 <불기 2554(2010). 4. 6 개정>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 제7조(품신평), 제7조의2(인사평가), 제7조의3(심의위원회)은 공포일부터 3월 후 시행한다.<불기2568(2024).09.11 개정>

② 이 규정 제7조(품신평), 제7조의2(인사평가), 제7조의3(심의위원회)은 직할교구를 제외한 교구본사는 각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총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3월 후 시행한다.<불기2568(2024).09.11 개정>

③ 이 규정 제9조는 불기2555(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공포 후 2010년도에 말사주지 임명을 받은 자는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불기

2568(2024).09.11 개정>

- ④ 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불기 2556(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95년 1월 1일 이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 영 시행일 이전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한 자는 제외한다.<불기2568(2024).09.11 개정>
- ⑤ 이 규정 제18조의2(미입주사찰 주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4.2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10.2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2010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의해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11. 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불기2568(2024). 0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